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로 본다.

- (7)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는 병원관리 및 진찰권발급 등,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는 1회 산정한다.

- (1)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하여 진찰을 한 경우
- (2)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 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재진진찰료)
- (3)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의사가 동일한 날에 진찰을 한 경우

다.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 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라. 진료담당의사가 검사·방사선 진단 등을 처방지시하였으나 요양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진료 당일에 검사·방사선 진단 등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방사선 진단을 실시한 당일의 진찰료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마.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작성·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요양기관인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조제받은 주사제를 투여받기 위해서 당해 요양기관에 당일에 재내원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입원료 등(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가. 입원료 등의 소정점수에는 입원환자 의학관리료(소정점수의 40%),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소정점수의 25%), 입원환자 병원관리료(소정점수의 35%)가 포함되어 있으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한다.

나. 입원료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사-121	MM047	풀치료 [1일당] Pool Therapy 가. 보행풀치료 Walking Pool Therapy 주 : 뇌졸중, 두부손상, 신경계의 이상 등으로 대기중에서 체중부하가 불가능한 경우 보행 및 보행에 필요한 하지근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1인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30분정도 풀내의 평행봉을 이용한 혼자서기, 체중 이동, 균형잡기 등의 훈련을 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201.87
	MM048	나. 전신풀치료 Whole Body Pool Therapy 주 : 근육, 신경계 이상 등으로 대기중에서는 체중 부하가 곤란하여 스스로 근력강화 및 유연성 등의 훈련이 불가능한 경우에 풀 내에서 1인의 물리 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30분 이상 튜브 등과 같은 기구를 이용하여 사지의 움직임을 이용한 여러가지 동작훈련을 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274.38
사-122	MM105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Rehabilitative Development Therapy for Disorder of Central Nervous System 주 : 중추신경계 장애로 인한 발달지연 및 근육마비와 경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38.00
사-123	MM111	작업치료 Occupational Therapy 가. 단순작업치료 Simple 주 : 1인의 작업치료사가 2인 이상의 환자를 상대로 동시에 10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68.52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사-124	MM112	나. 복합작업치료 Complex 주 :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10분 이상~30분 정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02.63
	MM113	다. 특수작업치료 Special 주 :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30분 이상 다양한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50.11
	MM11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1일당] Activities of Daily Living Training 주 :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식사, 옷입고 벗기, 배변 및 위생훈련 등 일상생활동작 적응 훈련을 최소 2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31.55
	MM120	신경인성 방광훈련 치료 Neurogenic Bladder Training 주 : 척수손상, 뇌졸중, 두부손상, 말초신경손상 등으로 인해 스스로 배뇨를 하지 못하는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배뇨반사를 자극하고 방광내압의 증가, 요도괄약근 이완 등의 방법으로 배뇨를 유도하면서 간헐적으로 도뇨를 시행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도뇨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189.96
	MM151	기능적전기자극치료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주 :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환자에게 최소 2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85.58
	MM131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 Myofascial Trigger Point Injection Therapy 주 : 1. 근막내 동통유발점에 생리식염수나 국소마취제 등을 주사후 스트레치운동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73.93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사-128	MM132	2. 동시에 2 이상의 동통유발점 부위에 각각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부위를 불문하고 110.91점을 산정한다. 재활사회사업 Rehabilitative Social Work 주 : 1. 재활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2. 「가」는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한다. 3. 「나」, 「다」는 각각 주 1회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2회 이내만 산정한다.	
	MM141	가. 개인력조사 Individual History Taking	182.45
	MM142	나. 사회사업상담 Social Work Counselling	115.28
	MM143	다. 가정방문 Home Visiting	378.40
사-129	MM290	호흡재활치료 [1일당] Rehabilitative Breathing Therapy 주 : 유발성흡기폐활량계 등 기구를 사용한 호흡운동, 체위배액치료 등 호흡재활치료를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82.32
사-130		재활기능치료 Rehabilitative Functional Training 주 : 제1절에 분류된 단순운동치료, 제2절에 분류된 운동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MM301	가. 매트 및 이동치료 Mattress or Mobilization Training 주 :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 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이동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매트훈련, 이동훈련, 경사대훈련 및 의자차훈련 등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76.02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MM302	나. 보행치료 Gait Training 주 :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보행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보행훈련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76.02
사-131	MZ008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for Rehabilitative Dysphagia Therapy 주 : 1. 중추신경계질환 등으로 인한 연하장애환자에게 30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191.27
서-141	MX141	연하장애재활치료 Rehabilitative Dysphagia Therapy 주 : 1. 중추신경계질환, 식도 또는 기관의 질환 등으로 인한 연하장애환자에게 1인의 작업치료사가 1:1로 30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219.26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사-30	MM300	적외선치료 [1일당] Infra Red Ray Irradiation	8.48
사-30-1	MM303	상기도 증기흡입치료 Humidification of Upper Airway 주 : 1. 급·만성 후두염에 한하여 산정하되, 적외선치료 (사-30)와 동일 실시한 경우에는 상기도 증기 흡입치료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한다. 2. 외래는 주 2회, 입원은 1일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3. Disposable Nebulizer Kit, Mask 재료대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17.21
사-31	MM310	자외선치료 [1일당] Ultraviolet Ray Irradiation	6.58
사-32	MM320	약욕 [1일당] Drug Bathing 주 : 각종 약물을 혼합한 약수에 전신욕을 20~30분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02.38
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 [1일당] Dermatological Ultraviolet Ray Therapy 주 : 피부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MM331	가. 상지(하지의 반)의 대부분의 범위 또는 두부, 경부 및 안면의 대부분의 범위 [9%의 범위]	55.30
	MM332	나. 하지의 1지, 복부 또는 배부에 준하는 범위 [18%의 범위]	60.24
	MM333	다. 양하지 또는 동체(복부 및 배부)에 준하는 범위 [36%의 범위]	65.17
	MM334	라. 전신대부분의 범위 [37% 이상의 범위]	71.98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사-34		피부광화학요법 [PUVA, Goeckermann, Ingram 등] [1일당] Dermatologic Photochemotherapy 주 : 1. 피부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2. 건선, 유건선, 균상식육종, 편평태선, 장미색비강진 등에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MM341	가. 상지(하지의 반)의 대부분의 범위 또는 두부, 경부 및 안면의 대부분의 범위 [9%의 범위]	109.97
	MM342	나. 하지의 1지, 복부 또는 배부에 준하는 범위 [18%의 범위]	126.42
	MM343	다. 양하지 또는 동체(복부 및 배부)에 준하는 범위 [36%의 범위]	144.52
	MM344	라. 전신대부분의 범위 [37% 이상의 범위]	205.64
사-35	MM350	고빌리루빈혈증에 대한 광선요법 [1일당] Phototherapy for Hyperbilirubinemia 주 : 신생아황달을 치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80.08
사-36	MM360	간헐적호흡치료(양압호흡 또는 음압호흡) [1일당] Intermittent(Positive or Negative) Pressure Breathing Treatment	527.63
사-38	MM380	Air Fluidized Therapy [실리콘 베드] [1일당]	540.95
사-40	MM400	양위 양압호흡치료 [1일당] BIPAP Treatment	1,202.65
사-41	MM410	수압팽창술 Hydraulic Distention 주 : 1. 투시비용 및 치료과정 중의 스트레치운동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71.54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사-42	MM420	2. 사용된 국소마취제, 생리식염수를 제외한 스테로이드제, 조영제 등의 약제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실사용량으로 산정한다. 신경인성 장훈련 치료 [1일당] Neurogenic Bowel Training 주 : 척수손상, 뇌졸중, 두부손상, 말초신경손상 등으로 인해 스스로 배변을 하지 못하는 신경인성 질환자에게 손가락 자극, 손가락을 이용한 분변제거, 복부마사지 등의 방법으로 배변반사를 자극하고 배변을 유도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직장분변제거술 및 직장마사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154.17
사-43	MM430	고빈도 흉벽진동요법 [1일당] High Frequency Chest Wall Oscillation 주 : 호흡재활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47.43
사-44	MM440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1일당] 가. 폐질환 운동재활치료 Rehabilitation Exercise for Pulmonary Disease	468.23
	MM441	나. 호흡근부전 재활치료 Pulmonary Rehabilitation for Respiratory Muscle Dysfunction	607.95
사-45		심장재활 Cardiac Rehabilitation	
	MM451	가. 심장재활교육 Cardiac Rehabilitation Education	268.38
	MM452	나. 심장재활평가 Cardiac Rehabilitation Evaluation	1,029.19
	MM453	다. 심장재활치료 Cardiac Rehabilitation Therapy	470.26
서-31	MX031	항문직장 및 골반근의 생체되먹이기치료 [1일당] Anorectal and Pelvic Muscle Biofeedback	321.57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서-32	MX032	분사신장치료 [1일당] 주 : 치과의사가 근막내 동통유발점에 기화성 냉각제 분사후 스트레치운동을 시술한 경우에 산정하되 사용된 냉각제의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158.42
서-34	MX034	요실금 전기자극 치료 [1일당] Electrical Stimulation for Urinary Incontinence	93.38
서-35	MX035	체위성안진교정치료 [기기 사용료 포함] Canalith Reposition Therapy 주 : 1. 양성발작성체위성현기증환자에게 관석정복술을 15분 이상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286.58
서-36	MX036	악관절고착해소술 [1일당] 주 : 치과의사가 측두하악장애환자의 급·만성 과두 걸림이 있는 경우 하악과두운동을 도수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73.49

제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 (1) 정신요법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행한 경우에 산정하되, 반드시 분류항목별 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분류항목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㉞”는 3년차 이상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㉞) 심층분석요법(아-1-다), 분석집단정신치료(아-2-나), 약물이용면담(아-5)
(㉞) 지지요법(아-1-가), 집중요법(아-1-나), 가족치료(아-3), 전기충격요법(아-7), 지속적 수면요법(아-8)
- (3) 위 “(2)”에서 규정한 분류항목 이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전문가(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아-11)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아-1		개인정신치료	
	NN011	가. 지지요법 Supportive 주 : 정신의학적 평가 하에 환자의 건전한 방어 기전들을 강화하고 심리적 장애요인을 억제하여 정신장애를 해소 내지 경감 목적으로 15분 미만 치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154.87
	NN013	나. 집중요법 Intensive 주 : 정신의학적 평가 하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지지적 기법 등 면담기법을 혼용하여 증상을 경감하고 자아방어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15분 이상 45분 미만 치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292.19
	NN012	다. 심층분석요법 Intensive Analytic 주 : 환자의 무의식 내용에 대하여 증상의 완화, 성격 구조 및 자아방어 양상의 수정 목적으로 45분 이상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454.83
아-2		집단정신치료 Group Psychotherapy 주 : 「가」, 「나」, 「다」 각각 주 2회 이내만 산정한다.	
	NN021	가. 일반집단정신치료 General	65.42
	NN022	나. 분석집단정신치료 Analytic	133.63
	NN023	다. 정신치료극 Psychodrama	97.45
아-3		가족치료 Family Therapy	
	NN031	가. 개인 Individual 주 : 한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를 행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185.23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아-4	NN032	나. 집단 Group 주 : 두 환자 이상의 가족을 대상으로 45분 이상 치료를 행하는 경우에 환자가족단위별로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한다.	95.98
	NN040	작업 및 오락요법 [음악, 서화, 조각, 운동, 작업 등] Occupational or Recreation Therapy 주 : 1. 실시종목수에 관계없이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외래의 경우 주 1회, 입원의 경우 주 5회 이내만 산정한다. 3. 각종 소모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54.15
아-5	NN050	약물이용면담 Narcosynthesis 주 : 치료기간 중 2회 이내만 산정한다.	230.91
아-7		전기충격요법 Electroconvulsive Therapy 주 :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산정한다.	
아-8	NN071	가. 일반전기충격요법 Simple ECT	1,025.24
	NN072	나. 특수전기충격요법 [마취하] Modified ECT	2,485.82
		지속적 수면요법 Continuous Sleep Treatment	
	NN081	가. 전기 Electro Sleep Treatment	428.27
아-9	NN082	나. 약물 Drug Induced Sleep Treatment	439.71
	NN083	다. 마취 Sleep Treatment with Anesthesia	494.38
	NN090	정신의학적재활요법 Psychiatric Rehabilitation 주 : 2~3개월 이상 장기입원 치료후 퇴원전 10회 정도 산정할 수 있는 요법이다.	184.34
아-10	NN100	정신의학적응급처치 Psychiatric Emergency Treatment	581.03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아-11		정신의학적사회사업 Psychiatric Social Work 주 : 1. 「가」는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한다. 2. 「나」, 「다」, 「라」는 각각 주 1회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2회 이내만 산정한다.	
	NN111	가. 개인력조사 Individual History Taking	182.45
	NN112	나. 사회사업지도 Social Work Guidance	115.28
	NN113	다. 사회조사 Social Investigation	115.28
	NN114	라. 가정방문 Home Visiting	378.40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 (1)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다만, 22~06시에 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을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6 으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처치 및 수술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2) 제1절에 기재되지 아니한 처치 및 수술로서 간단한 처치 및 수술의 비용은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므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3) 제1절에 기재되지 아니한 처치 및 수술로서 위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처치 및 수술료는 제1절에 기재되어 있는 처치 및 수술 중에서 가장 비슷한 처치 및 수술 분류항목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 (4) 대칭기관에 관한 처치 및 수술 중 “양측”이라고 표기한 것은 “양측”을 시술할지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 (5)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70%(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를 산정한다. 다만, 주된 수술 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 (6) 제1절에 기재된 분류항목 중 상·하악골 악성종양 절제술(자-40-나, 자-43-나), 비강, 부비동악성종양적출술(자-96), 비인강 악성종양적출술(자-104-1), 후두 전적출술(자-122-1-다), 후두 및 하인두 전적출술(자-125), 후두 전적출 및 하인두 부분적출술(자-125-1), 구순암적출술(자-215), 설암

수술(자-218), 구강내악성종양적출술(자-220-다), 이하선악성종양적출술(자-223-나), 인두악성종양수술(자-229-1), 부갑상선악성종양절제술(자-454-나), 갑상선 악성종양근치수술(자-456) 시행시 경부의 림프절 청소술을 병행한 경우에는 위 “(5)”에도 불구하고 경부림프절청소술(자-211) “주”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 (7) 근접하고 있는 다발성 절종을 수개 처에서 절개한 경우나 동일 검내에 존재하는 맥립종, 산립종의 수술 등은 1회 절개로 간주한다.
- (8) 수술은 개시하였으나 병상의 급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수술을 중도에서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술의 중단까지와 시술상태가 가장 비슷한 항목의 수술료를 산정한다.
- (9) 각 분류항목의 처치 및 수술 등에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도 각 분류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한다.
- (10) 각 분류항목의 처치 및 수술 등에 내시경을 이용한 경우 내시경료는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11) 처치 및 수술시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 ① 인공식도
- ② 인공심장판막
- ③ 인공심폐회로
- ④ 인공심박기
- ⑤ 인조혈관
- ⑥ 인공관절
- ⑦ 골, 관절의 수복 또는 결손보철용 인공재료 [체내유치]
- ⑧ 인공수정체
- ⑨ 조직대용인조섬유포
- ⑩ 1회용 혈산화기
- ⑪ 동정맥간도회로